

한국철도학회영문논문집논문투고규정

제 정: 2025.06.16.(이사회 의결)

제1조 (목적) 본 규정은 한국철도학회(이하 '학회')의 영문논문집 편집위원회(이하 "위원회") 운영규정에 의거 영문논문집의 논문투고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투고자격) 본 학회의 회원 및 비회원 모두 투고할 수 있다. 단, 교신저자 또는 주저자(제1저자)가 비회원인 경우 학회에서 별도로 정한 논문게재료를 납부해야 한다.

제3조 (교신저자) 공저의 경우 교신저자를 반드시 지정해야 한다. 교신저자는 논문의 투고, 수정 및 보완, 논문게재료의 납부 등 논문투고의 제반사항에 대해 모든 책임을 진다.

제4조 (논문작성) 위원회에서 별도로 규정한 논문원고작성규정(논문작성요강 및 세부지침)을 준수한다.

제5조 (참고문헌작성) 참고문헌은 논문의 끝부분에 본문에서의 인용 순서로 기술되어야 한다. 저자가 4인 이상인 경우에는 저자명을 4명 까지만 기입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논문작성요강 및 세부지침'에 따른다.

제6조 (논문투고) 논문투고는 상시가능하며 학회 홈페이지의 논문투고 및 심사 온라인시스템을 통해 이루어진다.

제7조 (원고투고 및 문의처) 논문투고 및 인쇄와 관련한 사항은 학회사무국 논문집담당자에게 문의 할 수 있다.

제8조 (논문심사료) 본 학회에서는 논문심사료를 별도로 부과하지 않는다.

제9조 (논문접수) 투고논문의 접수일은 교신저자가 논문원고를 논문투고규정에 따라 투고한 일자로 한다.

제10조 (논문반려) '논문투고규정' 또는 '논문작성지침 및 세부지침' 또는 '연구윤리규정' 또는 '투고 분야와의 적합성'을 현저히 위배하거나 영어 수준이 매우 미흡한 경우 투고논문을 반려할 수 있다.

제11조 (논문재투고) 논문의 재투고는 일반 논문투고절차에 따른다.

제12조 (논문반환) 접수된 논문의 원고는 일체 반환하지 않는다.

제13조 (논문공개) 접수된 논문의 원고는 논문심사를 위한 목적으로 접수일로부터 논

문심사 완료시점까지 논문심사 담당 편집위원과 위촉된 논문심사위원에 한해 공개된다.

제14조 (논문심사)

- ① 논문심사는 3명의 심사위원에 의해 온라인 논문심사시스템을 통해 이루어지며 이때 논문의 수정 및 보완이 요구될수 있다. 논문의 수정 및 보완은 심사위원과 편집위원의 지적 사항을 고려하여 이행하며 반드시 '논문작성요강 및 세부지침'을 준수해야 한다.
- ② 논문심사 결과는 교신저자에게 통보되며, 통보일로부터 초심 및 재심 이상의 경우 1개월 이내에 수정 및 보완된 논문이 제출되지 않는 경우 채택불가로 처리될 수 있다. 단,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 최대 2개월까지 연장이 가능하다.

제15조 (논문채택) 접수된 논문에 대한 게재 여부의 채택은 본 논문집의 논문심사규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결정한다. 단, 게재를 위해 논문의 부분적 수정 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제16조 (최종논문원고)

- ① 접수된 논문이 게재예정으로 채택되면 교신저자는 위원회에서 지정한 논문양식에 맞추어 작성한 최종논문원고를 제출해야 한다.
- ② 최종논문원고를 채택판정 통보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제출하지 않는 경우 투고논문이 교신저자에 의해 철회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제17조 (저작권양도서 및 저자점검표) 본 논문집에서 게재된 논문에 대한 일체의 저작권은 학회에 귀속된다. 교신저자는 모든 저자를 대표하여 위원회에서 정한 저작권양도서와 저자점검표를 제출해야 한다. 단, 채택판정 통보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저자점검표와 저작권 양도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교신저자가 해당 논문을 철회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제18조 (논문게재료) 교신저자는 채택으로 판정된 논문이 출판(인쇄)되기 이전까지 학회가 정한 소정의 논문게재료를 위원회가 정한 바에 따라 납부하여야 한다. 단, 본 학회 사무국에서 통보한 기한까지 논문게재료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교신저자가 해당 논문을 철회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제19조 (논문철회) 교신저자는 논문의 출판(인쇄) 이전에 국한하여 투고논문을 철회할 수 있다. 단, 논문의 조판 중에 철회할 경우에는 학회가 산정하는 조판비용 및 출판지연에 따른 일체의 손해비용을 교신저자가 부담해야 한다.

제20조 (논문저자변경) 논문저자명의 추가, 삭제, 저자명 순서에 대한 변경은 해당 논문이 출판(인쇄)되기 이전까지 가능하다. 단, 교신저자는 변경에 대한 사유서와 추가 또는 삭제되는 저자를 포함하는 모든 저자의 자필서명이 포함된 동의서를 제출해야 한다.

제21조 (논문게재순서)

- ① 채택으로 판정된 논문은 최종논문원고와 저작권양도서가 모두 제출된 일자의 순서로 게재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편집위원장 또는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게재 순서가 조정될 수 있다.
- ② 저작권양도서의 제출 또는 논문게재료의 납부가 지연되는 경우 논문의 게재가 지연될 수 있다.

제22조 (논문별쇄본)

- ① 별쇄본은 교신저자가 요청하는 경우에 한해 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한 실비를 부담하는 조건으로 제공할 수 있다. 단, 논문집 1권을 교신저자에게 무료로 제공할 수 있다.
- ② 교신저자가 별쇄본을 추가로 요청하는 경우에는 실비를 부담하는 조건으로 제공할 수 있다.

제23조 (논문상) 위원회는 논문집 투고 장려 및 활성화를 위해 논문상을 선정 및 시상할 수 있다.

제24조 (게재논문의 정정)

- ① 논문집에 기 게재된 논문에 대한 정정이 필요한 경우 편집위원회에 “게재논문 정정 신청서”를 제출하여 정정을 신청할 수 있다. 정정 신청은 해당 논문의 교신저자만이 할 수 있으며, 다른 모든 공저자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 ② 제출된 정정 신청은 편집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정정 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교신저자에게 통보한다.
- ③ 편집위원회에서 승인된 정정 신청 내용은 편집위원회에서 정한 차기 발행 논문집에 별도로 정한 양식에 의거 공표(인쇄)한다.
- ④ 게재논문 정정 신청서를 제출한 교신저자는 학회논문집 투고규정에서 정한 소정의 논문정정 비용을 납부해야 한다.
- ⑤ 정정 신청이 가능한 논문은 게재일로부터 12개월 이내의 것으로 제한한다.
- ⑥ 정정 내용의 범위는 본문, 수식, 표, 그림 등에서의 일부 오타나 오류로써 논문의 결과 및 결론에 영향을 주지 않아야 한다. 논문의 결론과 저자명에 대한 정정은 불가하다.
- ⑦ 정정 내용의 양은 전체 논문 분량의 1/10을 초과할 수 없으며, 과도한 경우 정정 신청이 거부될 수 있다.
- ⑧ 정정 신청의 목적, 내용, 방법은 모두 연구윤리를 준수해야 한다. 또한, 논문 정정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논문저자에게 있다.

제25조 (책임과 연구출판윤리)

- ① 투고 및 게재된 논문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저자에게 있으며, 저자는 학회의 연구윤리규정을 준수해야 할 책임이 있다.

- ② 타 논문집에 투고 중인 논문은 본 논문집에 중복 투고할 수 없으며, 본 논문집에 투고하여 심사 중인 논문은 타 논문집에 중복 투고할 수 없다.
- ③ 모든 저자는 본 학회의 연구윤리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본 논문집은 국제표준출판윤리규정(<https://publicationethics.org/node/11184>)을 적용한다.
- ④ “저자됨”은 아래의 항목을 모두 만족 시 저자, 한 가지라도 불만족 시 기여자로 한다.
 - 1) 연구 설계, 데이터 수집 및 분석에 많은 기여를 함
 - 2) 논문에서 중요한 내용을 작성하거나 수정함
 - 3) 논문 투고 전 최종 검토 및 승인을 함
 - 4) 연구의 정확성이나 진실성과 관련된 이슈가 제대로 조사 되고 해결되었다는 것을 보장하기 위해 “연구의 모든 측면”에 대해 책임을 지겠다는 합의를 함

제26조 (규정개정) 본 규정의 개정은 편집위원회 위원의 1/3 참석과 출석 편집위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편집자문위원은 참석 및 의결 정족수에 포함되지 않는다.

제27조 본 규정에서 언급되지 않은 사항은 편집위원장 또는 편집인 회의의 결정에 따른다.

부칙(2025.6.16.)

1. (시행) 본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